

국민취업지원제도가 추가로 5만 5천명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!

'회복과 성장의 마중물' 새 정부 추경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 확대
및 건설업 퇴직자 특화 신설

- (지원 인원 확대) 30.5만명 → 36만명
* 구직촉진수당 지원 +2.7만명,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+2.8만명(건설업 특화 1만명 포함)
- (건설업 퇴직자 특화 지원) 참여수당 +10만원
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+20만원(6개월)

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,65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.(8,457억원 → 10,109억원, 1,652억원↑)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'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, 저소득층,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.

올해는 30.5만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.5만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총 36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이번에 확대되는 5.5만명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I유형(요건심사형) 2.7만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II유형 1.8만명(청년 1만명, 중장년 0.8만명)이 포함되어 있다. 특히 II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한층 더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.

'23년 건설 일용직을 그만둔 ㄱ씨(62세)는 7개월이 넘는 실직 상태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채 '24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.

ㄱ씨는 직업심리검사와 취업특강, 심층상담 과정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희망 직무를 선택하여 **취업활동계획을 수립**하고,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**직무에 필요한 역량도 키웠다**. 또한 **전담 상담사**로부터 이력서·자기소개서·면접 클리닉 등 **집중적인 입사지원 컨설팅**을 받아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**취업알선**을 받아 고령에도 상용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.

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ㄱ씨처럼 건설업에서 일하다가 실직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하면 **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**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.

*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.4만원 × 6개월 → 월 최대 48.4만원(+20만원) × 6개월,
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원 추가 지급

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찾는 **건설업 퇴직자**가 더욱 많이 참여하여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**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**이라고 밝혔다. 특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, 직업능력 향상 사업 등을 실시하는 **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**하여 안내 문자 전송 등 참여자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.

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“이번 추경은 취업을 희망하는 더 많은 분을 지원하고, 특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직면한 **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**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”라며 “앞으로도 어려운 고용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1.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

2. 건설업 특화 프로그램(안) 개요
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책임자	과 장	허윤선 (044-202-7190)
		담당자	사무관	신이범, 박경옥 (044-202-7193, 7195)
			주무관	임영미, 김형미 (044-202-7194, 7197)



붙임1

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

- (개요)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*(통상 1년), 생활안정 지원(6개월)을 함께 제공(’21년~)
 - * 전담상담사와 1:1 심층상담(3~6회)를 통해 개인 역량·의지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(통상 1년, 최대 22개월)
- (근거법률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
- (지원요건) “연령”·“소득”·“재산”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I·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
 - (I 유형) 중위소득 60% 이하 및 재산 4억원 이하인 자는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구직촉진수당(월 50~90만원, 6개월) 지원
 - (I·II 유형) 중위소득 100% 이하 15~69세(15~34세 소득무관)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지원

구분	지원요건			지원내용
	연령	소득	재산	
I 유형	15~69세	중위소득 60% ↓	4억원 이하	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 (월50~90만원×6개월)
	청년 특례 15~34세	중위소득 120% ↓	5억원 이하	
II 유형	15~69세	중위소득 100% ↓ (청년: 소득 무관)	무관	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+ 취업활동비용 (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.4만원×6개월 등)

〈 주요 취업지원·구직활동프로그램 〉

- (취업지원프로그램) 심리·취업진로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프로그램(생계·의료·금융·주거지원 등) 연계 등
- (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) 이력서·면접 컨설팅, 일자리정보 제공, 동행면접, 채용박람회 등

- (개요) II유형 참여자의 최종 이직사업장이 건설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,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추가 지원
- (목적) 건설업 퇴직자의 참여율을 제고하고, 상용직 또는 직종 전환 등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지원
- (지원 요건) 이하 ①~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
 - ① II유형 참여자격 요건(연령·소득) 충족
 - ②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간 건설 관련 업종*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는 경우(상용, 일용, 노무제공자 포함)
 - * 세부 요건은 추후 확정 후 고용24 홈페이지 등에 게시 예정
 - ③ 취업활동계획을 수립
 - ④^{추가}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
- (지원 내용)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 참여수당 10만원 및 훈련참여 지원수당 최대 월 20만원(1일 1만원)×6개월 추가 지원
- (지원 규모) 건설업 퇴직자 1만명, 122억원('25년 下)
- (지원 시기) 각 수당(참여수당, 훈련참여지원수당) 지급 시마다 추가 지급
- (향후 계획) 시행지침 확정 및 사업홍보(7월) → 시행(8월)